96112

청 원 서

청원제목 :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부패방지법안

1996년 11월 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hi0 텔레 나우콤/ PSPD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3부
3. 청원서 3부
4. 참고자료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용지 (국회의원 151명 외 총 23,541명분)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7-8200 / 전송 : 797-7412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창 국

소개의원 : 천 정 배 외 5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창국)
건 명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1996년 11월 7일

소개의견

1.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노력이 반드시 공평하게 평가되고 보상된다는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부정부패가 엄하게 다스려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개혁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작업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형법상의 관련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이 있으나 부패관련 개별법규들이 산만하게 나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 자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적용과 부패행위 처벌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돈세탁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 부패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3. 따라서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해 고안되었던 여러 법적인 조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두전직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크고작은 공직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직부패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통합적인 반부패법제의 도입이 요청되는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부패방지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되었던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해서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돈세탁에 대한 방지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입법화하며,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상적인 제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보완신설하는 것은 물론, 공직부패에 대한 형사처벌 제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사정기구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보장할 구조적인 제도적 대안을 포함하는 종합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하며, 이 입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6. 특히 과반수이상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3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 그 취지에 동의하는 뜻을 표명한 만큼 이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할 획기적인 반부패종합법제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천정배 외 7인

참여연대 입법청원 부패방지법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부패방지법(안)

1. 입법취지

가.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부패왕국'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다. 말단 공무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왔다. 대통령이 수천억의 부정축재를 하는가 하면 부천시의 경우 하급 공직자들이 백억대의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규모와 방법, 그 확산 정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면 부패추방과 사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으나 일과성 구호에 불과했고 부패의 사슬은 오히려 견고해져 왔다.

우리에게 부정부패를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은 부정공직자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뿐 아니라 안기부, 청와대 까지 부정부패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투기화,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정의 대규모화와 부패의 보편화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구조성을 지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사회에 특유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이 바로 이 심각한 부패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패추방의 중추적 기능을 행사하여야 할 사정기관 자체가 공정하고 추상같은 권한행사를 제대로 해 왔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그 스스로 부패하거나 또는 부패세력의 압력과 유혹에 초연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국가적 거대사건이든 아니면 작은 규모의 토착적 비리사건이든 간에 이들 사정기관은 단호한 처단을 해 내지 못했다. 거기에다가 사법부마저 엄정한 형벌을 가하는데 실패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그동안 부패추방을 효율적으로 이룩하는데 불가피한 제도들이 결여된 개별적인 부패방지법제의 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등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불가피한 무기들이다.부패는 언제나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해서만 그 진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패는 은폐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부패는 점점 더 교묘한 수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없이는 효율적인 부패 수사와 사전 차단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없이 부패의 청산은 있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패방지법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패공직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제반 형사법제와 엄정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야 할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제에도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지니지 않고 있는 부패방지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단일하고도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절박하다.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법제가 법체제상 무리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부패 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부패추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외국의 입법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부패의 사슬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계화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의 비자금사건은 국제적 망신과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증폭하고 있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은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부패추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법제로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패예방과 추방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의해 입법화됨으로써 우리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거부정, 건전하지 못한 정치자금수수의 관행과 정치문화, 행정정보의 공개와 규제행정의 완화,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의 강화, 부패 소지가 많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해임건의제의 도입, 부패의 근원적 방지로서의 공직자의 생활 보장, 계좌추적권의 부여등 감사원 기능의 강화 등의 문제는 부패방지법에 포괄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따로이 정치관계법제의 개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부조직법, 각종 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의 개정등으로 해결할 것을 염두에 두어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별개의 운동에 의해 추진할 것임을 참고로 밝힌다.)

나.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의 방향과 요강

부패방지법은 부패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부패문제는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더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제로는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의 흩어져 있는 부패방지법제를 보완 종합화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여된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및 특별검사제등을 완비하여 단일 종합법으로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부정부패방지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한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전개된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보고 우리는 부패추방과 투명성보장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속출하고 있는 부정부패사건과 스캔들을 보면서 그와같은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사정정책으로 우리의 부패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

공직자윤리의 확립은 과연 가능한가? 그토록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론 시민의 지속적 감시와 정부의 부패추방에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의지등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청렴의무규정와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신고,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직사회의 부패에 젖어온 기존관행과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일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외국의 입법례 중 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까지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가 20$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비롯한 선물의 기준과 부정한 선물의 처리절차등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안)은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등을 많이 참조하여 뿌리깊은 부패관행과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규정하였다. 어떤 선물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매우 꼼꼼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도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인사이고 게다가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부패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인사의 비율을 6인으로 늘렸으며 부패추방 시민운동단체의 위원추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와 등록재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더 나아가 실사를 감사원에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재산등록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집안식구'들을 누가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려 하겠는가.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자!

우리 사회에는 부패공직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렴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깨끗한 공직자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동료 또는 상사의 부정을 감지하거나 혹은 부정에의 참여 유혹을 받았을 때 이를 고발하는 것은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의 호루라기'를 불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부서 또는 집단의 부정을 고발해 오는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비호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뜨리는 데 관건이 된다. 즉 비리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보호될 때만이 공직사회의 부패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그 내부를 훤히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것을 고발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부정과 부패를 끊을 수 있으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패방지법(안)은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와 더 나아가서 비리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 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음으로써 부패방지의 커다란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돈세탁규제없이 부패는 사라질 수 없다.

돈세탁은 부정한 자금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태우와 전두환비자금사건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돈세탁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금융기관의 음성적인 협조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적발하기는 거의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돈세탁을 처벌하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돈세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패방지법(안)은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법적 규범으로 확립되고 있는 돈세탁의 철저한 규제와 이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안전판을 걷어치우고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자 한다.

부정부패의 적발과 필벌이 요구된다.

기존의 처벌법규만으로도 이를 엄정하게 지켜나간다면 어느정도의 부패척결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사회복귀배제와 범죄수익의 철저한 몰수가 요구된다. 이에 부정방지법(안)은 부패행위를 세분, 구체화하고 새로운 부패범죄를 규정하였다.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규정과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범죄의 가중처벌, 뇌물을 주어 부패를 유혹한 증뢰자의 수뢰자와의 동일한 처벌규정 등을 두었다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1994년 공무원범죄의 경우 11.7%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최근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들어났듯이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5.18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엄정하고도 추상과 같은 수사기구의 확립 없이는 모든 부패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은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만약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패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검찰을 가졌다면 부패가 이 사회에 이정도로 만연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구성하고 여기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래 특별검사제를 요구해 온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부패추방에서만이라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부패추방에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꾀함과 동시에 부패방지특별수사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처단함으로써 윗물맑기를 제대로 만듬으로써 아랫물도 자연스럽게 맑아질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외국의 입법사례

동남아 각국의 경우

동남아 각국에서는 단일한 부패방지법이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문제에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싱가포르등이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법제의 개혁으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에 대한 이같은 단호한 법제적 대응과 반부패 드라이브로 그나마 부패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의 부패방지법(1947년)을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의 독직 및 부패방지법(1961년) 대만의 부정공직자처벌법(1963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1969년)등이 그 예가 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을 검찰과 별도로 두어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본 부패방지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부패방지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 프라이버시법, 정부윤리법 중 특별검사규정, 공직개혁법 중 내부고발자보호조항, 세금개혁법 중 정보공개조항, 상원윤리법, 하원윤리법등에 의하여 부정부패를 빈틈없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부윤리법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미줄같은 공직자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본 부패방지법의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의 법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영국 역시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1889), 1906년 부패방지법, 1916년 부패방지법등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1989년 내지 1916년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이들 법제에서도 우리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도입하도록 노력하였다.

2. 주요골자

제 1 장 총 칙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기업,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제2조, 제4조, 제5조), 그것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할 지언정 부패추방이 우리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기업,국민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패추방 시민운동의 육성, 지원 조항을 둠으로서(제3조)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부패추방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조직화됨으로써 부패추방이 정권의 일시적 구호에 그치거나 상층부의 주도에 의한 한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제 2 장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지,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의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제7조)

또한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제한(제8조)과 업무외 소득제한(제9조)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외 소득을 규제하여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제10조)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발본하고 그럼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다.(제11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선물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물등의 처리는 이를 신고한 후 시장가격으로 반환,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13조)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다.(제14조)

이러한 선물등에 관한 규제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였으며, 퇴직공직자들의 친목단체등이 해당 부서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권을 도모하는 폐해를 금지하였다(제16조). 이에 더하여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하였다.(제19조)

제 3 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이 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등에 관한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종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판되어온 사항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손질하였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다(제20조). 특히 국세청, 관세청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의 경우에는 6급이상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민원부서, 이권관련부서들의 경우 전 공무원의 등록이 바람직하나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우선 6급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등록의무재산(제21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무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예컨대 기존의 일천만원 이상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공정과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였으며(종래 5인에서 6인으로)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추방시민운동단체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제27조)

등록재산에 관하여 허의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조사결과 부패방지특별수사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재산의 실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제25조 7항, 8항)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제31조)

제 4 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이 장은 참여연대에서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참고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정과 부패가 공모되고 진행되는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발해 옴으로써 부패의 전모를 쉽게 파악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이와같이 부패추방의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참여연대 안에 다만 그 적용대상에 있어 부패방지법(안)의 전체체계상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제40조). 이것은 공직자가 아닌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정보제공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부패행위에의 가담 거절, 부패정보의 은폐에 협조하지않는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 5 장 돈세탁 규제

돈세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번 두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른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및 그 시행령 등에서도 돈세탁규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입법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위 긴급재정명령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돈세탁규제는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안을 참고하였으나 민변의 안이 간명하고 본 법의 체계에 부합하여 민변의 안을 대체로 원용하였다. 다만 돈세탁의 대상범죄에 본법상의 범죄를 추가하였다.(제54조제5호)

제 6 장 부패행위의 처벌

공직자의 부정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특가법의 규정이 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2분의 1의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법의 본 장은 흩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망라하고 일원화, 세분화시킴으로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대만의 부정공무원처벌법과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본법을 참고하였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량이 매우 높고 엄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는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대만의 예에 따른 것인데 대만의 경우는 형량이 본법안의 2배에 달함을 참고로 언급한다.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일반적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그 형량을 인상한 것이다.(제66조, 제67조)

주로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 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70조)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7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73조 내지 제80조에서는 본법의 제2장과 제3장에 위배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자행동규범에 위반하거나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벌하여 제2장과 제3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81조에서는 본법상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제82조와 제83조에서는 방조와 교사범을 벌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교사범의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범의 실행착수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86조에서는 이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제 7 장 불법재산의 몰수 등

공직자 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 등에관한 특례법을 원용하였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특수공직자범죄에서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함으로서 확대하였다.(제6조8호)

제 8 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고(제137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둠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141조)

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하였고(제143, 144조)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 강력한 수사를 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권력비리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동의를 요하고(제140조)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제정신청제도를 확대하였고(제150조) 탄핵을 명문화하였다.(제147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 제거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깨끗한 사회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진다.

제3조 (부패추방시민운동의 지원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기업의 책무) 기업은 정경유착을 단호히 배제하며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을 추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일체의 부정에 가담하지 아니하며 이를 감시하고, 실천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급자"라 함은 직전상급자 뿐만아니라 그 공직자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모든상급자를 포함한다.
3. "부패행위"라 함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 또는 제반 법령을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장가격"이라 함은 선물 등 그 물건을 제공받을 당시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동일한 물 건의 소매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물건의 소매가격을,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명목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본다.
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갸. 해외 금융기관

6.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공직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라. 이 법 제58조 내지 63조 및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

9.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직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10.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11.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 2 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부분은 밑줄표시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조문은 말미에 공직자윤리법 몇 조인지를 표시함)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업무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의 수행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9조 (업무외의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10조 (대부등에 대한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재정보증등 일체의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2조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 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 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 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13조 (금지된 선물등의 처리절차)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본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곧바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선물 등을 제공받기 전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본다.

제14조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①②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 받는 공직자 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15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 처리절차)

① 공직자가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직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되고 그 유지·관리등에 관해서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다.(공직자윤리법제15조)

제16조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과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한 공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이 그 퇴직시 근무하였던 부처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일체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③ 제1, 2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7조 (취업승인신청)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제18조)

제1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

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제19조)

제19조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부정부패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제20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직원
5. 법관 및 검사
6. 소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개정전;대령)
7. 교육공무원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의 교육감 · 교육장 및 교육위원
8.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9.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부서, 검찰청, 조달청 소속공무원 중 5 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 인허가업무, 규제 및 지도단속업무, 민 원업무, 구매 조달 계약업무, 회계경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기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

직자윤리법제3조)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 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제21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개정전;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 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 ·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 · 유가증권 · 채권 · 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5백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액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5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4. 합명 · 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이상 개정전: 1천만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 ·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 상가 · 빌딩 · 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 · 수량 · 내용 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 · 예금 · 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 · 공채 · 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증권거래소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 · 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 · 크기 · 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 · 크기 · 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 · 제작년도 · 제작회사 · 등록번호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제4조)

제22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 강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 · 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5. 정부의 원 · 부 · 처 · 청 소속 공무원은 당해 원 · 부 · 처 · 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사무처
7.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교육청
11.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 · 부 · 처 · 청. 다만, 서울 특별시 · 직할시 · 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 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 및 시 · 군 · 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정부의 원 · 부 · 처 · 청소속공무원과 감사원 ·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으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제5조)

제23조 (변동사항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20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직자윤리법제6조)

제24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23조 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5조·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 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7조)

제25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감사원(개정전: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감사원(개정전: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비리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특별수사부 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전;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8조)

제26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증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27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소속공무원, 관할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 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 소속공 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6인(개정전;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정부패의 방지와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8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 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은행감독 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 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23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 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10조)

제29조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의 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

제30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 ·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

제31조 (성실등록의무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항 삭제)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제11조)

제32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33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자윤리법제14조)

제34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

제35조 (금융거래자료의 제공 · 누설등 금지)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직자윤리법제14조의3조)

제36조 (기획 · 총괄기관)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 ·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윤리법제20조)

제37조 (국회에의 보고) 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제38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제21조)

제39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 · 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제3항(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 록사항을 열람 ·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32조 후단(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33조(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공직자윤리법제22조)

제4장 공익 정보제공자의 보호

제40조 (적용대상) ①이 장은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1.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자.
2. 제보의 제보를 위하여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3. 본법 제44조의 내부의 방식의 절차에 따라 내부부패행위를 방지하려 노력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의 이익이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1조 (적용의 예외)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보하거나, 제공하는 정

보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42조 (제보처리기관 및 조사방법) ① 감사원은 제보를 처리한다.

② 감사원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보내용과 관련된 문서 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하게 하거나 구두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된 제보의 조사를 각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⑤ 본 법상 감사원의 직접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고위공직자와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의 비리에 관하여는 감사원은 부패방지특별수사부 또는 검찰에 조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보의 방법) ①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부패행위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는 성명 주소,연령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더불어 조사대상, 효과적인 조사방법,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공익정보제공자의 성실의무) 공익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부패행위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칠 때 제보행위가 불가능하여지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와 내부의 절차로는 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신변의 보호) ① 조사기관은 공익정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후에도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감사원은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 (신분의 보장) ①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는 공익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조사기간동안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사기간 동안 또는 조사 후 제공자 본인이 전직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 (기타의 자에 대한 보호) ①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 협조를 거절함으로서 불이익을 본 자는 감사원에의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44조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함으로서 불이익을 본 자,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본 자도 같다.

제49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의 결과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사원은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감독기관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 (재조사의 요구) ① 제공자가 감사원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감사원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조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책임의 감면) 공익정보제공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공무원의 부패행위신고의무) 공직자는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포상) 공익정보제공에 의하여 손실의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저히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등 부패일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제5장 돈세탁 규제

제54조(돈세탁금지) 누구든지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죄로부터 유래한 불법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 또는 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규정된 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지방세법 제67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
3.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 대마관리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죄
4. 형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범한 죄
5.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에 규정된 죄

제55조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고의무등)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당해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고액금융거래 보고의무) ①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의 관계) 이 법률의 규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한다.

제58조 (벌칙) ①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9조 (벌칙) ①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벌칙)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2조 (미수범) 제58조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63조 (예비,음모) 제5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장 부패행위의 처벌

제65조 (적용대상) 공직자가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6조 (국유재산등 절취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절취,불법점유,횡령한 자
2. 직권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제징수하거나 재물을 강점 또는 강제모집한 자
3. 공사 또는 물품구입시에 금액이나 수량을 조작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4.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한 자

제67조 (공금유용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법령에 위배하여 세금을 수납하거나 공채를 모집한 자
2. 직무상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한 자
3. 직무에 관하여 뇌물이나 그밖에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을 요구,약속,수수한 자

제68조 (직무유기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상 지급의무가 있는 재물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금품모집 또는 토지,노역, 재물을 징발하여 민폐를 끼친 자
3. 주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도모한 자.
4. 주관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

제69조 (미수범) 전 3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 (가중처벌)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부패방지특별수사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제71조 (공직자에 대한 중뢰죄) 공직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그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벌한다.

제72조 (비호방임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그 소속 직원에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비호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계 또는 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의 증거가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방임한 때에도 같다.

제73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사적이용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2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 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0조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 (조사방해죄)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조사를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자
3. 이 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공공기관의 장

제82조 (방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 보관, 관리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3조 (교사)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자는 동 범죄가 실행에 착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범과 같이 처벌한다.

제84조 (과태료) 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자격정지)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한다.

제86조 (가석방의 제외)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가석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공직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개정부분은 밑줄표시함)

제1절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87조 (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89조 (몰수의 요건등) 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6조제8호 1의 나목의 죄와 다목의 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죄에 있어서-이상 삭제) 불법재산은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경우 및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제90조 (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91조 (불법재산의 입증) 특정공직자범죄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특정공직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직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몰수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

제92조 (제3자의 권리존속등)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법원은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3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4절제1관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제95조 (형사보상의 특례) 채권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① 제6조제8호 1의 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동호 다목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

제97조 (고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수량 기타 그 재산을 특정할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②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 (참가절차)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9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된 때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와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있어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⑧ 참가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99조 (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0조 (참가인의 출석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기타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1조 (증거)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같다.

제102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9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또는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에 기하여 참가신청이 기각되거나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때
3. 참가의 취하가 된 때

제103조 (상소)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후의 심급에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 (대리인)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제105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97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97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보전절차

제1관 몰수보전

제107조 (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특정공직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부연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1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9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10조 (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보전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1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

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민사소송법 제603조제2항·제611조제2항 및 제612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0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611조제2항중 "제1항" 및 제612조중 "제611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612조중 "법원"은 "검사"로 각각 본다.

제112조 (선박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제113조 (동산의 몰수보전) ① 동산(제112조에 규정된 것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첨부시키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114조 (채권의 몰수보전)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사소송법 제562조 · 제58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62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562조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581조제1항중 "배당요구"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58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동 조제3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각각 본다.

제115조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① 제111조 내지 제114조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② 기타재산권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제111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 및 제612조의 규정은 기타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제611조제2항중 "제1항" 및 제612조중 "제611조"는 이 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612조중 "법원"은 "검사"로 각각 본다.

제116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 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8조 (실효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 기등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112조에 규정된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기타재산권(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에 규정된 기타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120조 (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교부를 실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의 "제581조제3항"은 이 법 제120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21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강제집행의 정지) 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510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726조제1항 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4조 (기타 절차와의 조정) ① 제119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 개시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21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1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

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122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 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5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등)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추징보전

제126조 (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특정공직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 이 공탁하여야 할 금원(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액, 발부 연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107조제4항의 규정은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126조제1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동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기타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129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제130조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등의 재판의 집행)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관 보칙

제134조 (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동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제135조 (상소제기기간중의 처분등) 상소제기기간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6조 (불복신청)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제137조 (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138조 (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제139조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140조 (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

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41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142조 (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144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5조 (관할) ①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②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146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47조 (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148조 (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 (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폐지한다

제3조 (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중 "이법"은 "형법 제134조 전단"으로, 제42조 제1항중 "제6조"는 "형법 제134조 후단"으로 각각 본다.